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37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 윤준병ㆍ허성무ㆍ장종태

이광희 • 이병진 • 문대림

박지원 • 최민희 • 이원택

정동영・양부남・문금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제68조(청구 사유) ①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u>헌법재판</u>소에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함에 있어 법원의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 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 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 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

<u>②</u> (생 략)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
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
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